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60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4.04.18	koh_93@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4.22	

[국밥도령]

정 보 공 개 서

코흐(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코흐(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6-6,지하1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2679-777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2679-777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코호(주)	국밥도령 외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6-6,지하1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9.02	2020.09.07	김동영	02-2679-7778	-
	법인등록번호	110111-7608594	사업자등록번호	369-81-0205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동영/ 코호(주)	국밥도령 외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6-6,지하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영	02-2679-7778	-
사내이사	오동훈/ 코호(주)	국밥도령 외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6-6,지하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영	02-2679-7778	-
감사	이은비/ 코호(주)	국밥도령 외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36-6,지하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영	02-2679-777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후, [국밥도령]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코흐(주)	
상 호	국밥도령 00점	
상표(서비스표)	-	-
로 고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633,842	426,915	2,206,927	4,893,119	653,418	605,778
2023년	2,565,140	356,419	2,206,927	4,138,789	-19,523	34,293
2024년	1,719,378	362,735	1,356,643	4,031,867	118,351	215,302

* 근거자료는 별첨[1]에 있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동영	대표이사	2020.09.02 ~ 현재	대표	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오동훈	사내이사	2020.09.02 ~ 현재	본부장	가맹점 담당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은비	감사	2020.09.02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	1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국밥도령] 이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코흐(주)/파스타입니다	서양식	2020.7.13~현재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전문점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864
가맹본부	코흐(주)/배고픈덮밥이	한식	2022.7.15~현재	배고픈덮밥이- 덮밥 전문점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669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소유자 (출원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	-	-	-	-	-
☐ 당사는 상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5. 최근 3년간 [국밥도령]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19	0	0	0	19

6. [국밥도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코흐(주)/ 김동영	파스타입니다	20200864	서양식	190/4	183/3	170/1
가맹본부	코흐(주)/ 김동영	배고픈뿔밥이	20220669	한식	51/1	84/1	98/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단위:천원)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m²		3.3m²		3.3m²	
전체	19	—	—	—	—	—	—	
서울	5	—	—	—	—	—	—	6개월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3	—	—	—	—	—	—	6개월 미만,5곳 미만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경기	6	—	—	—	—	—	—	6개월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3	—	—	—	—	—	—	6개월 미만,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1	—	—	—	—	—	—	6개월 미만,5곳 미만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세종	1	—	—	—	—	—	—	6개월 미만,5곳 미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
2024년 가맹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개 지점 모두 6개월 미만 운영으로 매출 산정 기재 제외하였습니다.

8. [국밥도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국밥도령]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	19	6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국밥도령]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비고
----	----	----	----------------------	----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연중	43,836	(비공개)	-	-
광고	(비공개)	연중	7,399	(비공개)	-	-
판촉	-	연중	36,437	(비공개)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정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국민은행 신길동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80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99-999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현재 해당없으나 추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부터 시정조치 등을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국밥도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코호(주)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코호(주)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	-	-
가맹비 (가입비)	-	-	-	-	-
교육비 (요리지도 등)	-	-	-	-	현장교육 요청시 1,100 추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	-	-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원·부재료 등의 공급 대금과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금 (VAT 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00
가입비	-
교육비	-
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3,100	310	-	-	약 33m² (약 10평)
장비/설비	미지정	1,100	110	설치 후 익일	설치 5일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등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미지정	2,000	200	공급 2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주요 식자재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외부닥트, 외부공사, CCTV,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밥도령 브랜드는 배달전문 브랜드입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지원 :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실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미지정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기한 전 취소	취소기한 경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로열티	-	-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 발생채권 순으로 상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분(기준:2024년 , 단위:천원)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6개월 이상 운영한 매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국밥도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국밥도령]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본 계약이 해약 내지 해지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가맹본부에게 3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이러한 조치를 기일 안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에 관해 이미지를 손상시키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 가맹본부가 이러한 조치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밥도령]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안됨.
 - 노하우 사용을 중지할 것.
 - 매뉴얼, 기타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받았거나 제공받은 문서·도면·기타 도서 전부를 모든 사본과 함께 가맹본부에게 반환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
 - 가맹본부는 위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이행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차입한 보증금으로부터 변제총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함.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국밥도령]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별도)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
☐ 6개월 이상 운영한 매장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국밥도령]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국밥도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산정기준	금액	비고
해당 없음					

- 2) 당사가 [국밥도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산정기준	금액	비고
해당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돼지국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메뉴가 추가될 수 있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수육국밥			
순대국밥			
모듬국밥			
내장국밥			
얼큰국밥			
항정살덮밥			
제육덮밥			
제육볶음			
항정살볶음			

☐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은 일부 상품을 예시한 것으로 귀하가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에 대한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국밥도령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구두경고	서면 시정 요구 후 가맹점 운영권 제한	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돼지국밥	10,500	본사공문발송	-
수육국밥	10,500		
순대국밥	10,500		
모듬국밥	11,000		
내장국밥	10,500		
얼큰국밥	11,500		
항정살덮밥	11,400		
제육덮밥	10,000		
제육볶음	10,000		
항정살볶음	10,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은 일부 상품을 예시한 것으로 귀하가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밥과 제육덮밥 등을 주메뉴로 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종	국밥도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비고
해당 가맹점포로부터 반경 1.5km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음의 경우는 일반 매장의 영업 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철도 또는 왕복 7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②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쇼핑몰 등)

※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별첨하는 영업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국밥도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 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3%	6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국밥도령]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1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1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1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1조 1항
○ [국밥도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1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1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별첨[2]에서 제시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2조 11항
○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6조 1항
○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36조 1항
○ 당사가 당사와 을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36조 1항
○ 위생적이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 또는 이후에 점포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36조 1항
○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슈퍼바이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6조 1항
○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하	36조 1항

지 않는 경우	
○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36조 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6조 1항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	36조 1항
○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36조 1항
○ 로열티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매출관리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 받은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36조 1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위해 만든 레시피(조리방법 등)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36조 1항
○ [국밥도령]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밥도령]의 타가맹점과 [국밥도령]의 경쟁사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36조 1항
○ 가맹본부가 설정한 가맹점 운영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36조 1항
○ 기타 가맹계약 시에 협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6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36조 2항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6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6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요될 경우에는 비용 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개시 후 3월내 가맹본부에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업무위탁	본부승인시 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국밥도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국밥과 제육덮밥 등을 주메뉴로 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요)→허가여부 통지→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국밥도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시간	매월 26일 (2월은 24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됩니다. 단, 광고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며, 가맹점이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국밥도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홍보+ 상품광고+ TV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 1개월전) →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물 광고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 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금 일천오백만원(W15,000,000)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를 위반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②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금 일천만원(W10,000,000)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1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제3항의 가맹본부 임직원의 정당한 점포출입을 막은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1항의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개, 보수지시를 거부한 경우
 - ③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금 오백만원(W5,000,000)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10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금 일백만원(W1,000,000)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⑤ 인테리어, 기기, 시설, 물품공급, 교육 등 이행이 진행된 경우, 위 조항의 위약금과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동종영업금지 의무 위반,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 일방적인 폐점, 일방적으로 가맹본부 승인 없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오천만원(W50,000,00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침해일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W300,000)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해지 요청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되는 경우
 - 3. 천재지변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위의 경우 이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에 계약해지 요청을 할 경우에 해지 위약금으로 금 삼백만원(W3,000,000)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9페이지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8~9페이지참고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8~9페이지참고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 가맹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국밥도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없음					

Ⅷ.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국밥도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영업 중 인지해야할 사항 제품의 관리법 출판리 방법 창업에 대한 마인드교육 본사규정 및 방향	실습 및 점포 경영지도	가맹점오픈 전 2주일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매뉴개발 가격변동 및 규정변경시 점주 집체교육의 필요성시	본사교육장 집체교육 등	반기별 및 필요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국밥도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약 3일	-	현장 교육시 1,100
보수 교육	1일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 제2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점(신림점)	서울 관악구 조원로170, 지하1층 5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55,874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중합상담과(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10개 국밥도령 가맹점리스트]

[illegible]

[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